



# 전세권필증

등기권리자: 광진구청

서울 광진구 구의동 79-8 고광빌딩

## 부동산등기

1. 토지분할전문 (일괄 서비스)  
: 지분이전등기 ▶ 분할소송 ▶ 분필등기
2. 매매 / 증여 / 상속 / 신탁
3. 근저당 / 전세권 / 임차권
4. (재)외국인 관련 부동산등기

## 민사소송

1. 소송 / 가압류, 가처분
2. 지급명령 / 제소전화해 등
3. 채권집행 (추심, 전부)
4. 개인파산, 회생

# 등기완료통지서



접수번호 : 26193

대리인 : 변호사 강성수

아래의 등기신청에 대해서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.

신청인 : 광진구청

(주민)등록번호 :

주소 :

부동산고유번호 : 2401-2004-006876

부동산소재 : [건물]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79-8 고광빌딩

접수일자 : 2013년4월19일

접수번호 : 26193

등기목적 : 전세권설정

등기원인및일자 : 2013년04월08일 설정계약

2013년 4월 22일

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과  
등기관



# 전세권설정계약서

## 부동산표시

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79-8 고광빌딩  
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타브지붕 6층  
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 
지하1층 355.46㎡  
1층 210.12㎡  
2층 212.78㎡  
3층 212.78㎡  
4층 214.13㎡  
5층 175.52㎡  
6층 214.13㎡  
옥탑층 22.32㎡(연면적제외)

## 1. 전세금: 금500,000,000원 (금오억원)


전세권 설정자는 위 전세금을 이 계약 당일 정히 영수하고 그 소유인 위에 쓴 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권자로 하여금 사용, 수익케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전세권설정 계약을 체결한다.


- 제 1조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를 위하여 위에 쓴 부동산에 대하여 순위 1번의 전세권을 설정한다.
- 제 2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2013년 4월 19일부터 2015년 4월 19일까지로 한다.
- 제 3조 전세권의 범위는 사무실용, 다중주택로 하며 전세권자는 본건 부동산을 그 본질의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.
- 제 4조 전세권자는 전세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일반적인 관리에 속하는 수리, 보수등을 하여야 한다.
- 제 5조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의 승낙없이 목적물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개조하므로써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되었을 경우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.
- 제 6조 전세권자가 그 사용 수익을 위하여 현상을 변경하였을때는 존속기간 만료후 즉시 원상 복구하여 전세권설정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.

## 특약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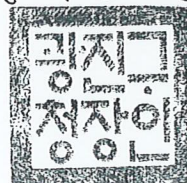
아래 당사자간 상기와 같이 전세권 설정계약을 체결함.

2013년 4월 8일

전세권설정자 1. 이종준(420124-1063112)   
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79-8 고광빌딩 - 601

2. 김성란(520114-2122612)   
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79-8 고광빌딩 - 601

전세권자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 
광진구청장







접	수	서기	년	월	일
		제	호		

등 기 필